



# 의료심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과 의무화 검토

정성희 연구위원

연구

의료기술 발전으로 의료심사자의 의학지식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보수교육의 체계성 미흡과 의무화 부재로 의료심사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임. 선진 보험회사는 의료심사자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비급여 영역 확대, 보험의학 관련 분쟁 사례 증가 등으로 의료심사자의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의료심사자<sup>1)</sup>에 대한 의학지식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계약심사자(언더라이터)의 의학적 계약심사(Medical Underwriting)<sup>2)</sup>에서 피보험자의 위험 평가와 인수 결정 및 보험금 지급심사자<sup>3)</sup>의 보험사고 조사와 보험금 적정성 평가·확정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이나 의료 지식이 필요함.
  - 피보험자의 유병 상태에 따른 계약 선별 능력이 중요하며, 예로 피보험자가 청약서상에 고혈압을 고지하였을 경우 계약심사자는 고혈압과 타 질병(심장병 등)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 할증을 통해 인수함.
- 특히, 실손의료보험에서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sup>4)</sup> 및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행위 등으로 지급보험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계약심사 및 청구·지급심사 담당자의 보험 의학적인

1)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심사자와 계약 체결 이후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금 지급심사자가 있음.  
 2) 질병과 피보험자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 할증 또는 보험금 삭감 등의 방법을 통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오영수 2003 재정리).  
 3) 보험업법에 정한 손해사정사와 보험업감독규정에 정한 보조인 제도가 있음.  
 4) 201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480억 원 중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은 1,820억 원으로 52.4%를 차지함(금융감독원 2016. 9. 5).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의료심사자의 관련 자격증 취득 시 기본적인 의료지식<sup>5)</sup>만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자격 취득 이후의 보수교육<sup>6)</sup>에 대해서는 체계성 미흡과 의무화<sup>7)</sup> 부재로 의료심사자의 의료지식 전문성과 업무 능력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해당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과 실제 직무현장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보험회사, 독립손해사정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의학 실무와의 연관성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A 손해사정 서비스 전문회사 교육 담당자 인터뷰에서 국내 지급심사자 교육체계는 보험기초 및 약관 교육, 차트 보는 법 및 질병 코드 입력에 대한 실무 교육, 입원·통원의료비 처리에 대한 실무 선임자의 교육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새로운 질병 발현이나 치료법 개발 등으로 인해 관련 자격증 획득만으로는 의료 전문성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함.

■ **한편, 대부분 선진 보험회사의 경우 의료심사자의 경력 연수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언더라이터는 보험전문연구기관인 LOMA(Life Office Management Association)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련 과목을 이수하거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언더라이터 교육 과정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손해사정사의 면허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면허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일정한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보험회사, 독립손해사정업체 등은 주 보험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5)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2차(AKLU)와 3차(FKLU) 과목에 ‘의학개론’과 ‘생명보험의학 각론’이, 신체손해사정사 자격시험 2차 과목에 ‘의학이론’이 각각 포함됨.

6) 손해사정사 보수교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3조’에 신설(2003. 9. 26)되어 약 3년간 시행되다 보상직원의 업무 부담 및 실효성 저하 등의 이유로 폐지됨(2006. 11. 30).

7) 변호사, 변리사 등 대부분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서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험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공인회계사와 보험중개사 이외에는 보수교육의 의무사항이 없음.

-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료연수제도<sup>8)</sup>를 도입하고, 이후 현재까지 손해보험회사의 의료연수 참여 현황에 대한 감독관청의 감사가 시행되고 있음.
  - 손해사정사의 실무 경험에 따라 통신연수, 고급과정 등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손해사정의 난이도가 높은 부위(두부, 경부, 척추 등)에 대해서는 의학 실무에 밀접한 교육을 실시함.
  - 또한, 의료연수제도를 통해 보험업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진단 및 보상기준을 전파하여 보험회사 심사체계의 표준화 유도를 통해 손해율 관리를 도모함.
- 국내에서도 비급여 영역이 확대되고 보험의학 관련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료심사자의 의학 판단기준 역량 강화가 긴요한 상황이므로, 보험업계의 체계적인 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보수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보험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의료연수 프로그램을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확대 개편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sup>9)</sup> **kiri**

8) 1984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1988년 일본손해보험협회(GIAJ: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산하 의료연수센터(MEI: Medical Education Institute for Insurance Adjusters)를 설립함.

9) 보험연수원은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정상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보험분야 의료연수과정을 대폭 신설하기로 발표함.